

##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(정정)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, 「파주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5조 및 「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에 따라 구성·운영하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년 2월 12일

파 주 시 장

※ 정정사항: 모집기간 (당초 2026.2.10.~2.26. → 변경 2026.2.12.~2.27.)

### 1. 모집인원 및 분야

가. 모집인원 : 00명

나. 모집분야 : 토지이용, 건축·주택, 교통, 환경, 방재, 경관

※ 모집분야 및 인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### 2. 위원회의 기능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파주시 도시계획조례」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

### 3. 위촉기간 : 위촉일로부터 2년

### 4. 응모자격

○ 모집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대학(교) 또는 대학원의 모집분야 조교수급 이상

나.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(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/계획분야에

-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)로 실무경력 5년 이상
- 다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모집분야 기술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
- 라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모집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특급기술자
- 마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모집분야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

○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(매월 2회 이상, 수시 회의)할 수 있는 자

## 5. 응모자격 제외자

- 가.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
- 나. 파주시 내 3개 이상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이미 활동 중인 사람
- 다.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회(6년) 이상 위촉된 사람
- 라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
- 마. 관내 현업종사자
- 바. 기타 응모자격 등에 부적합한 사람

## 6. 제출서류

- 가.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지원서 1부
- 나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
- 다.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(해당기관 발행) 1부
- 라. 자격 또는 학위, 기타 실적 증빙자료 1부
- 바. 소속기관장 추천서 (소속기관장 추천 시)
  - ※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, 부득이 사본 제출 시에는 “원본대조필” 필수
  - ※ 응모원서 양식은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에서 내려받기 가능
  - 파주시 홈페이지 → 공고·홍보 → 공고·입법예고 → 고시공고

## 7. 모집기간 및 접수처

- 가. 접수기간 : 2026. 2. 12. ~ 2. 27. (16일간)
- 나. 접 수 처 :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도시상임기획팀(민원동 2층, 031-940-4992)

다. 제출방법

- 방문(공휴일 제외), 등기우편(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), 이메일(haig@korea.kr)
- 주 소 : (우)10932 파주시 시청로 50 (아동동, 파주시청 도시계획과)

라. 기타사항

-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유효함
- 우편, 이메일 접수의 경우 ☎031-940-4992로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

8. 심사 및 통지 : 적격자 선정 후 위촉 대상자만 개별 통지

9. 기타사항

- 가. 위원 모집은 학회, 협회 등 우수인력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공개모집과 외부 추천방식으로 병행
- 나.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다.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
- 라.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
- 마.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「파주시 도시계획 조례」에 따라 수당 지급
- 바. 위원회 위촉 후 참석률(소집심의 기준)이 전체위원 평균 미만으로 저조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계속해서 두 차례 이상 불출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직권으로 해촉 할 수 있음
- 사. 「파주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6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등)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
- 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940-4992)로 문의